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주요 이슈 체크

브로콜리 CISO/CPO
보안전략연구소
박 나 룡

broccoli

PROCESS OF OUR PROJECT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의 이해를 기반으로 홈페이지, 채용 페이지의 주요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미흡점을 찾아본다.

PROJECT

사례중심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법규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개인정보의 유/노출 사례를 알아보고 대응한다.

PROCESS OF OUR PROJECT

FINISH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ISMS 인증 체계에 포함되어 관리 된다면 정보보호 수준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START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 개인정보의 정의
-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 개인정보 흐름도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개인정보란?

① 살아있는

② 개인(자연인)

③ 해당 정보로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가능한 정보

④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 '용이하게 결합한다' 와 그 해석의 접근

  Q . 용이하게 결합한다고 볼 수 있을까?

① 각각의 정보항목 별도의 DB 저장
② 해당 DB에 대한 개별적 접근통제
③ 정보 항목의 매칭 여부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명확화

② 필요 최소한의 정보

③ 적법하고 정당한 수집
원칙) 정보 주체의 동의
예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존재

④ 필수 / 선택 동의항목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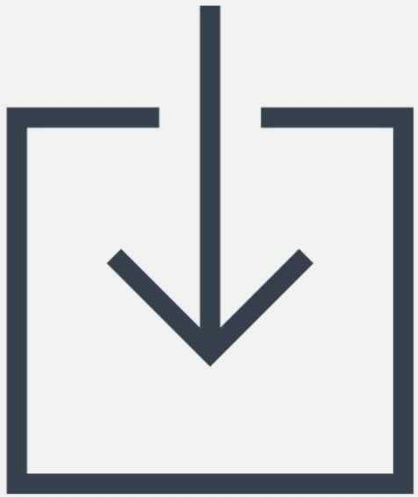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정보통신망 법 제22조

< 동의를 받는 방법 >

①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

② 각각의 동의 사항 구분 (필수/선택)

③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시 필수)

④ 동의 없이 / 동의 필요 정보 구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수집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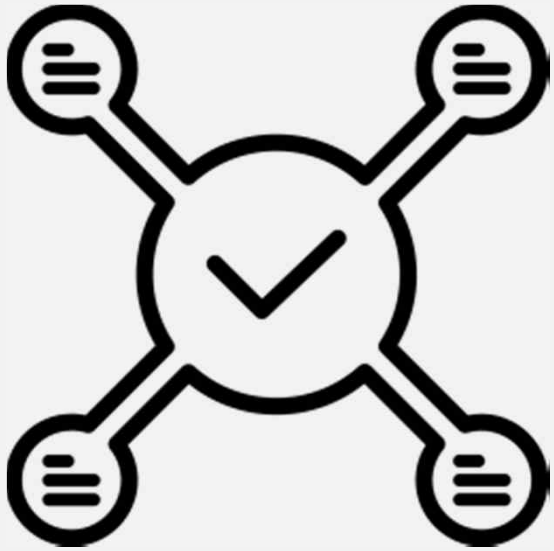

< 개인정보 이용 시 유의사항 >

1. 정보주체 이외 수집 출처 표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

   ①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권리

❖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위의 사항을 고지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 정보 또는 법 제 24조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수집 이용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 제 3자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필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 업무 위탁 시 공개 및 동의>

①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는 자
②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탁 사실에 대한 별도의 동의 의무 없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정보통신망 법]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이 원칙

❖ 서비스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 동의 대신 고지로 갈음

수집 이용 제공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 지체 없이 파기>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③ 폐업하는 경우

▪ '지체 없이'란?
정보주체 요구에 대한 조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 소요되는 시간

오프라인 서류 조사 시간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사정이 없다고 보임

<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

정보통신망 법 제 29조

①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③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④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 유효기간 : 원칙적 1년

전자상거래법 : 최대 5년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분리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 불가능

이용자의 요구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특별한 규정

수집 이용 제공 파기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개인정보 흐름도 –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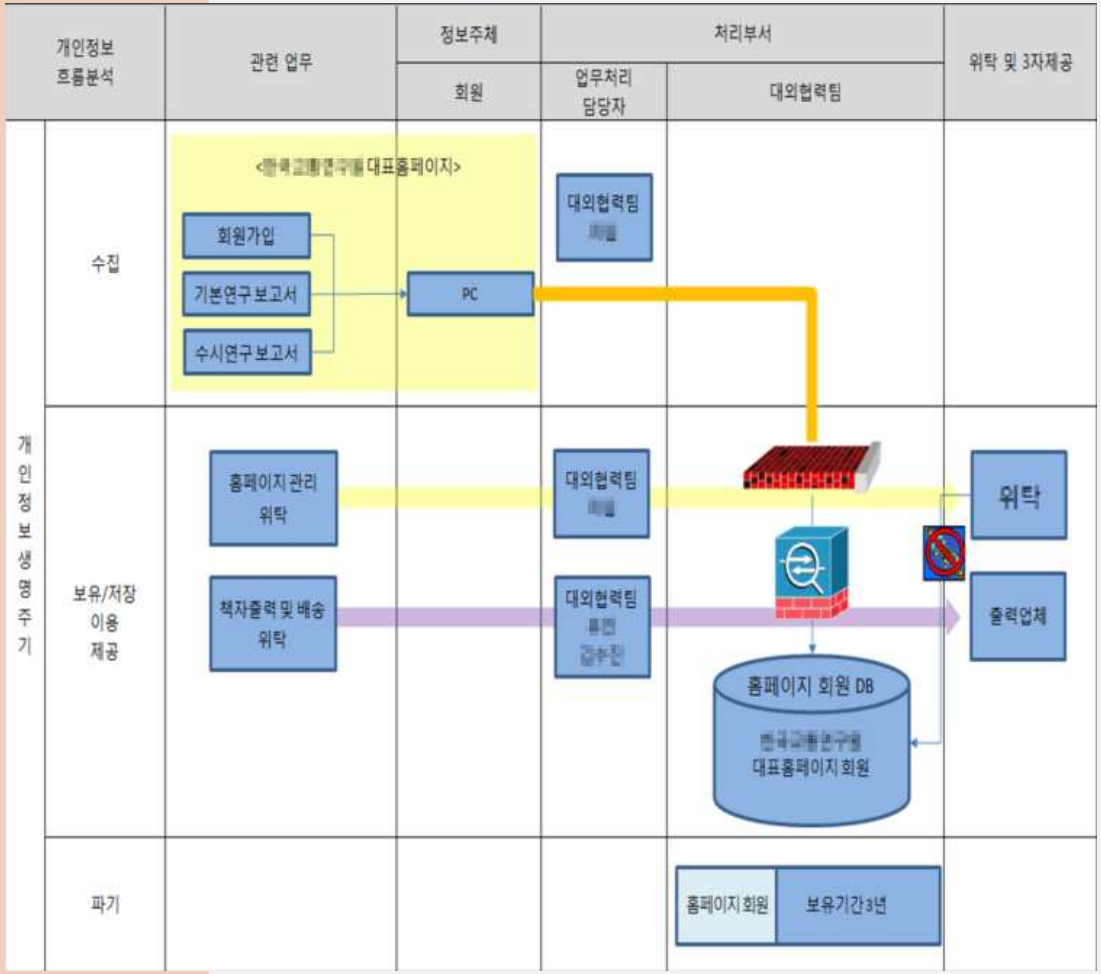

주요 점검결과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취약

-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과다 보유**
  -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 계정 15개 생성 운영
-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보안관리 미흡**
  - 개인정보처리 내역(log) 기록 미 관리/검토
  - 계정 권한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미흡

불필요한 고객정보 저장

- **회원정보 이중관리**
  - 홈페이지 회원을 DB와 엑셀파일로 관리(엑셀파일은 수동입력)
- **불필요한 고객정보 과다 보유**
  - 홈페이지 회원을 엑셀파일로 관리하면서 업데이트 시 별도파일을 생성하여 관리

저장된 고객정보 보호 및 파기조치 미흡

- **고객 배송정보 파일 암호화 미적용, 저장/전송**
  - 고객 배송정보는 담당자(사서) PC에 저장 후 출력업체에 전송 (고객정보 : 이름, 연락처, 주소)
- **고객정보 파기 미흡**
  - 보유목적 달성 시 고객정보 파기 미이행

위탁 시 보호조치 미흡

- **고객 배송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
  - 고객 배송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파악이 미흡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및 관리감독 미흡

개선 및 권고사항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개선**
  -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권한재검토 후 재부여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로그기록 보관 및 주기적인 검토 필요
- **저장된 고객정보 보호 조치 개선**
  - 이중으로 관리하는 회원정보 통일 및 정리 필요
  - PC에 저장되는 고객정보 암호화 필요
- **위탁시 보호조치 개선**
  -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파악/관리 필요

01.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개인정보 흐름도 – 채용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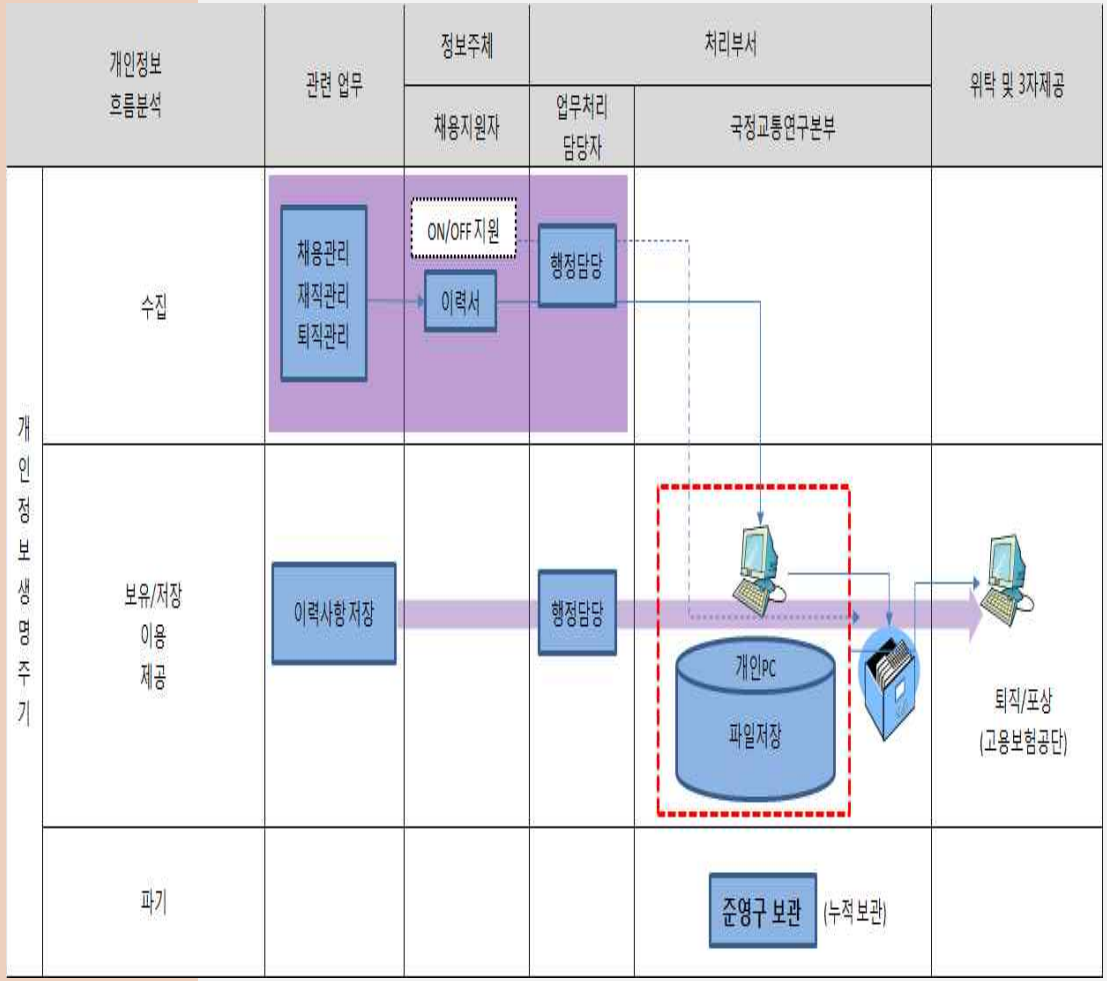

주요 점검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절차 미흡

-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절차 미흡**
  - 채용지원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절차 미흡(동의서 양식)
- **채용 시 목적에 맞는 채용양식 미 제공**
  - 채용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시 이력서 등 양식에 따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저장된 채용정보 보호 및 파기조치 미흡

- **채용 지원 파일 암호화 미적용**
  - 채용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 저장하지 않음
  - 문서로 보관하는 개인정보 출력문서를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지 않음
- **채용정보 파기 미흡**
  - 보유목적(서류탈락 등) 달성 시 파기 이행미흡

제3자 제공 관리 미흡

- **내부직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리 미흡**
  - 내부업무를 위해 타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않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절차 개선**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항목 및 절차 마련
  -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맞는 수집항목 양식 개선 필요
- **저장된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실시**
  - 수집 목적이 완료된(채용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정리(파기, 분리보관 등) 필요
  - 연구원이 보관해야 할 자료를 분류하여 분리보관 필요
- **제3자 개인정보 제공 관리**
  -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내역을 목록으로 관리 필요

개인정보 위반 사례

- 실태점검 위반 사례
- 법규 위반 사례 분석
- 개인정보 유출 사례
- 개인정보 노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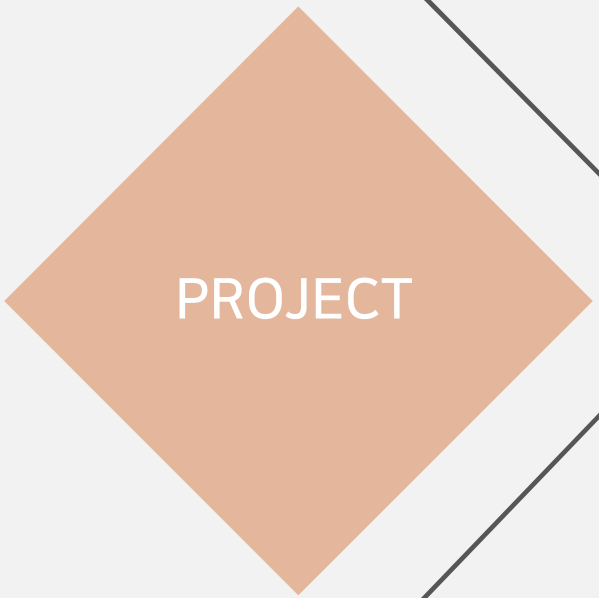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현장점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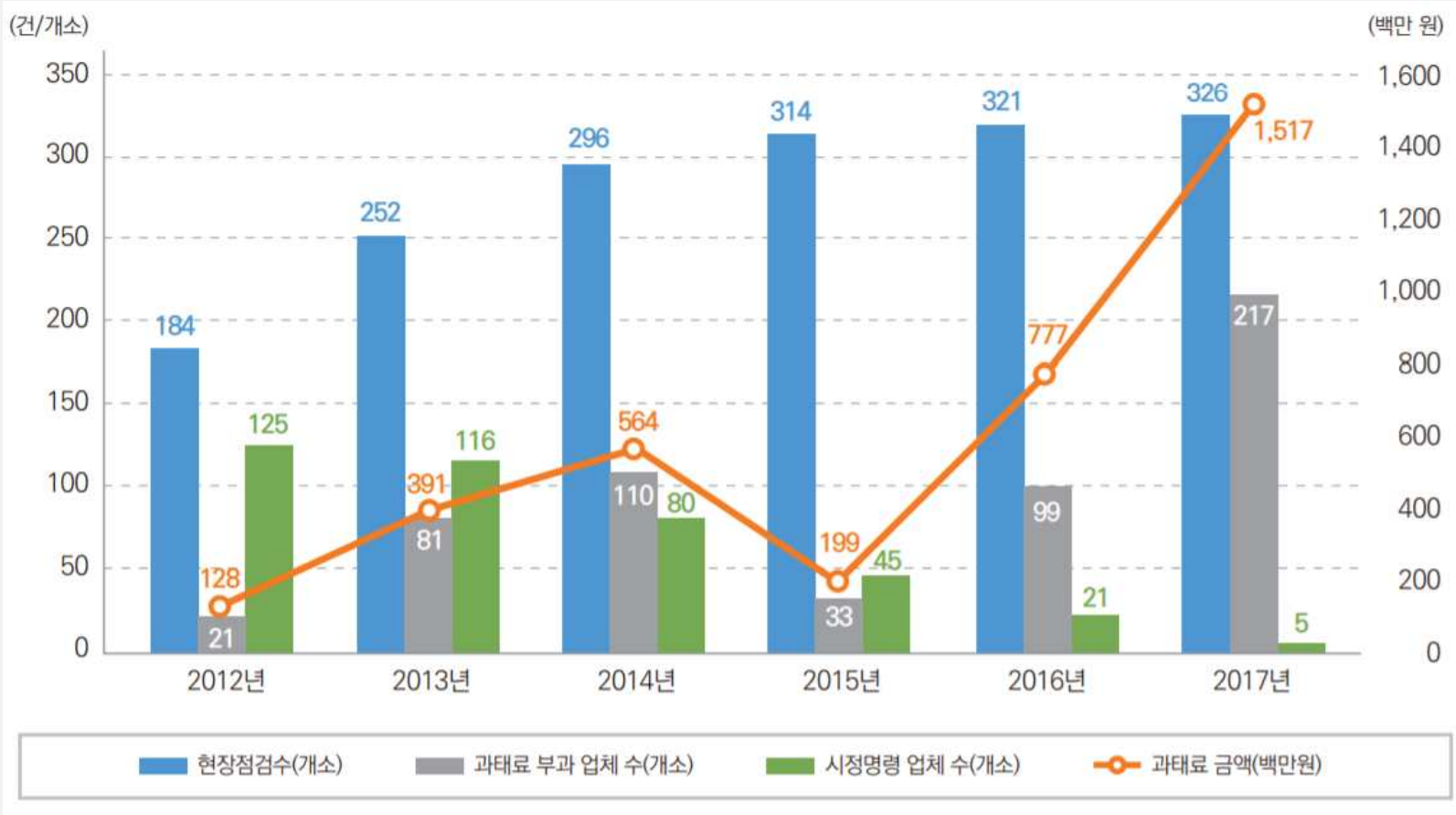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2018>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실태점검 위반사례 - 공공

-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제 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제 24조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 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 29조 (안전조치의무)
- 제 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주체 동의 필요

0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0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0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0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부가적인(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시,
거부권 고지 및 불이익 고지절차가 누락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고객의 접수내용에 대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받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3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경우는 **별도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제공, 구매 및 요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이메일 확인,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가입 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
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전달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전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재해용 시 인사지원자의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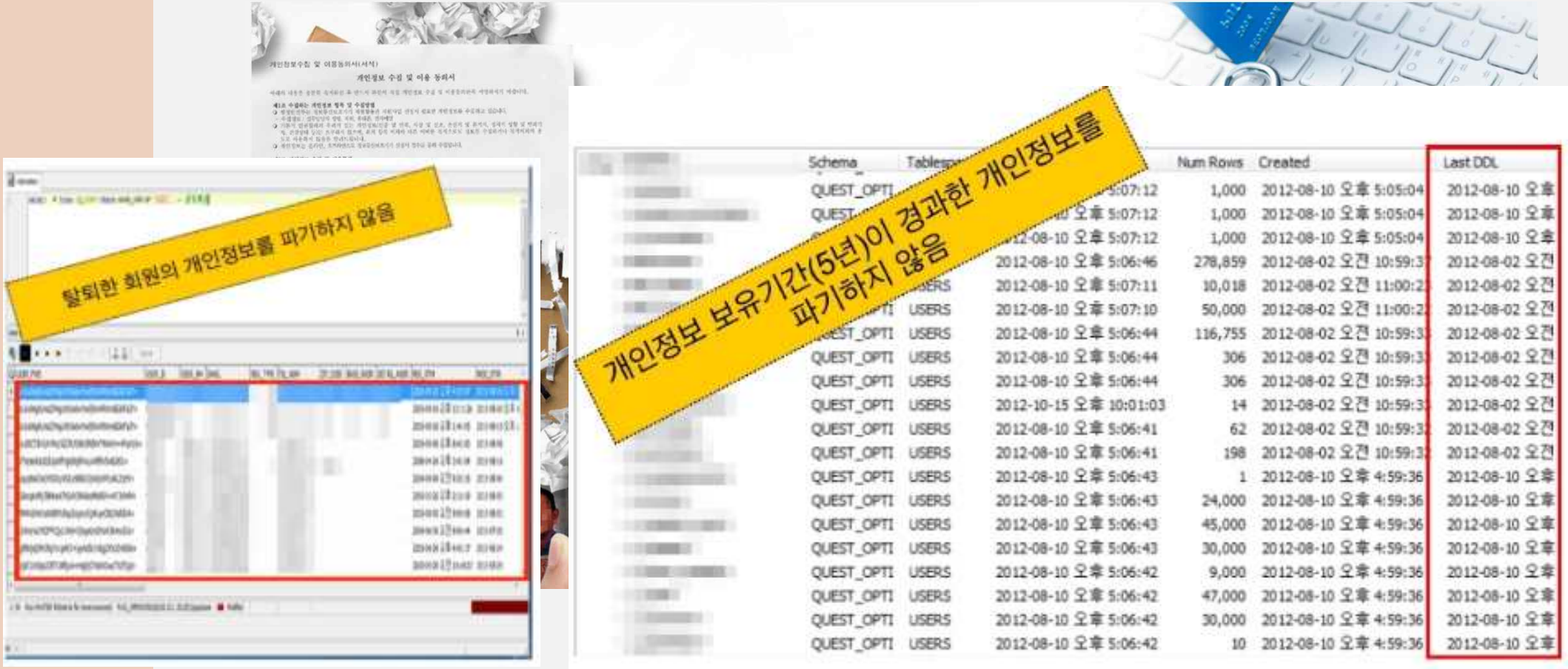

<그림: 보안뉴스>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파기 >

- 법적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파기 미이행
  - 다른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제 1항 위반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해당 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
  - 법률에 따라 일정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관리
  -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및 소각 등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파기를 위한 가장 첫 시작은 ?
  - 개인정보 보유 현황 식별
  - DB, WAS, 관련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보관되어 있는가 ?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

※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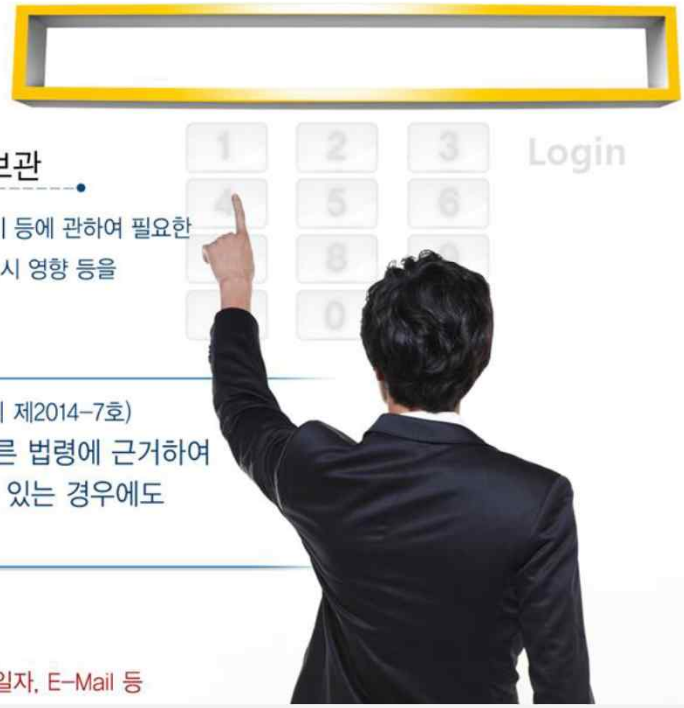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정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제5조(접근통제)③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실명확인 = 주민등록번호 + 이름

※ 본인확인 =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공공)I-Pin, My-Pin, 주민등록발급일자, E-Mail 등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0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0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0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0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0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0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0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준수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탁자 처리 업무 지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과련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여야 한다

위탁 개인정보 보호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에 따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0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02 접근권한의 관리

03 접근통제

04 개인정보의 암호화

0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06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07 물리적 접근 방지

08 개인정보의 파기

※ 출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4.12.30.]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 2014.12.30., 일부개정]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제 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필수적 기재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⑥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⑦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⑧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사항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⑩ 시행령 제 30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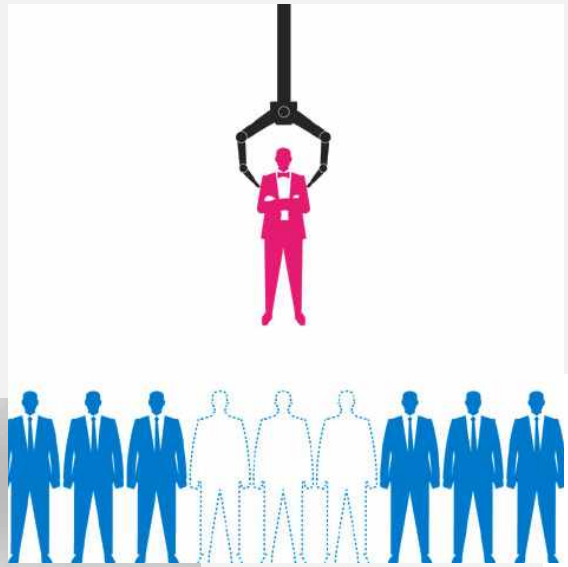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유출?

-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0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컴퓨터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0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0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0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후, 개인은?

범죄 악용 / 금전적 피해 / 사회활동 지장 초래 / 정신적 피해 심각

신상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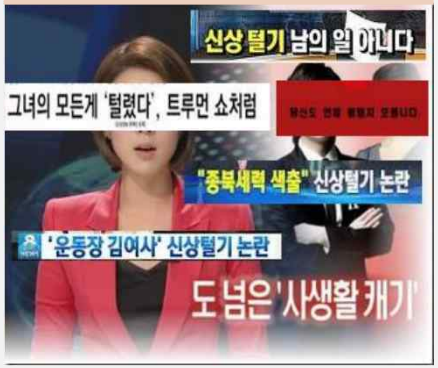

명의 도용

보이스 피싱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후, 기업은?

최근 5,000 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facebook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167323

1인당 최대 4만달러씩 2조 달러 벌금 가능

페이스북 주주들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개인정보 유출에 '페이스북 삭제' 운동 확산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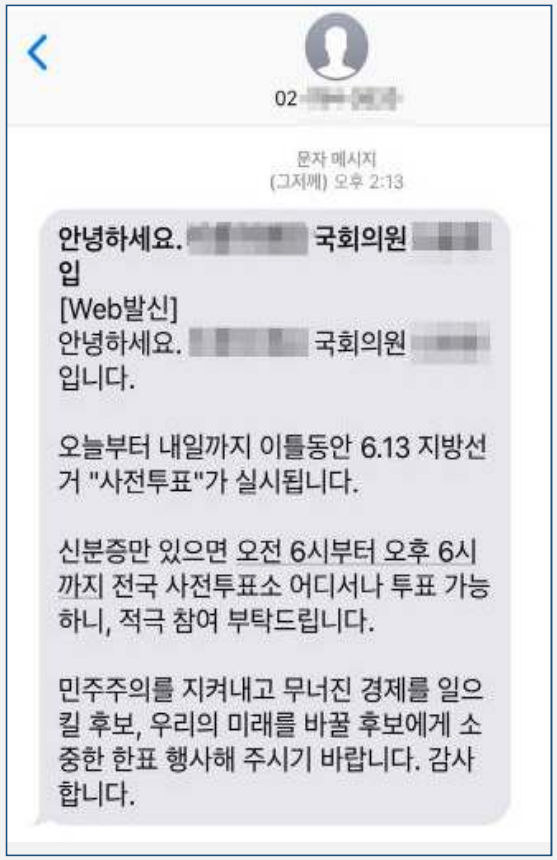

출처 : KISA 118 사이버민원센터, 디지털데일리

-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 동안 선거 홍보문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7932건

- 홍보문자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민원 상담 유형은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 **수신거부**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가 수신된다**는 것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 학부모들이 건설현장에 석면이 안전하게 제거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학부모 석면감시단을 꾸리고 재건축 조합측의 공사를 감시하기로 함.
- 구청이 조합측으로 학부모 석면감시단 7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함
- 해당 학부모 석면감시단의 정보가 재건축정비사업 홈페이지에 공개됨.
- 학부모 석면감시단원의 집으로 재건축 조합측 사람들이 찾아오는 등 감시단원의 사생활이 노출됨.
- 구청은 유사시 가족 등을 불러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지 고의성이 있거나 일부러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답함.

출처 :TV 조선

석면감리 주민감시단 71명

순번	이름	주소	휴대전화	생년월일
1	이OO	XX아파트 OO동 OO호	010-XXXX -XXXX	19XX. XX.OO
2	김OO	XX아파트 OO동 OO호	010-XXXX -XXXX	19XX. XX.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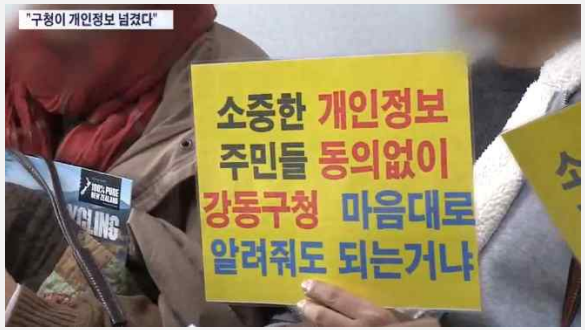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례

캐***** 항공 – 고객 94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항공사 측이 지난 3월, 정보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7달 뒤에 이를 밝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출처 : JTBC 뉴스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유출 시, 사후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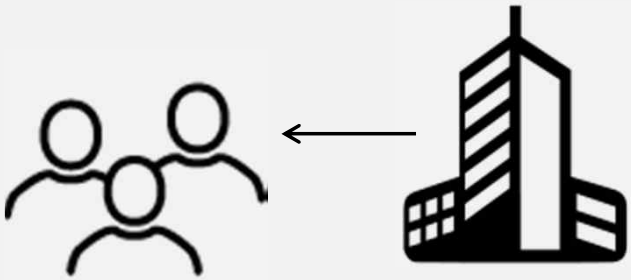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즉시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통지

– 통지 항목 5가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 시점과 그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 방법,
기관의 대응 및 피해구제 절차, 피해 신고 담당 연락처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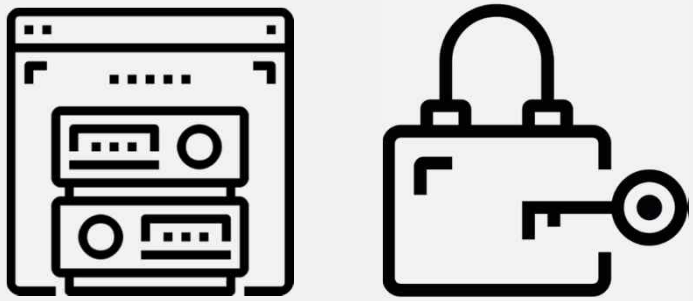

-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조치 취하기

– 필요 긴급조치
(접속 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 유출 정보 삭제 등)
– 긴급조치 이행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기술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유출 시, 사후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③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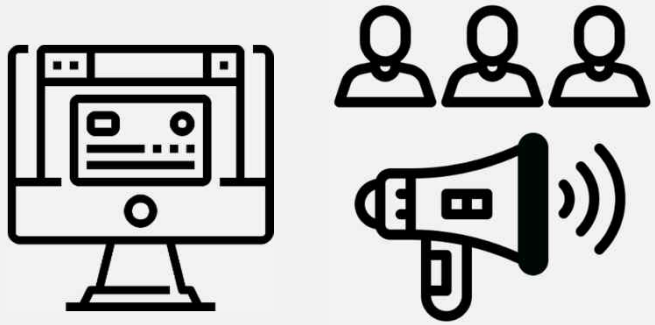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 개인정보가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가 1건 이상 유출된 경우(정보통신망법)
– 유출통지 및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7일 이상 게재 (개인정보보호법)
– 30일 이상 게재 (정보통신망법)
– 사건 경위 , 유출규모, 유출된 정보, 유출 사실
등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유출 시 사후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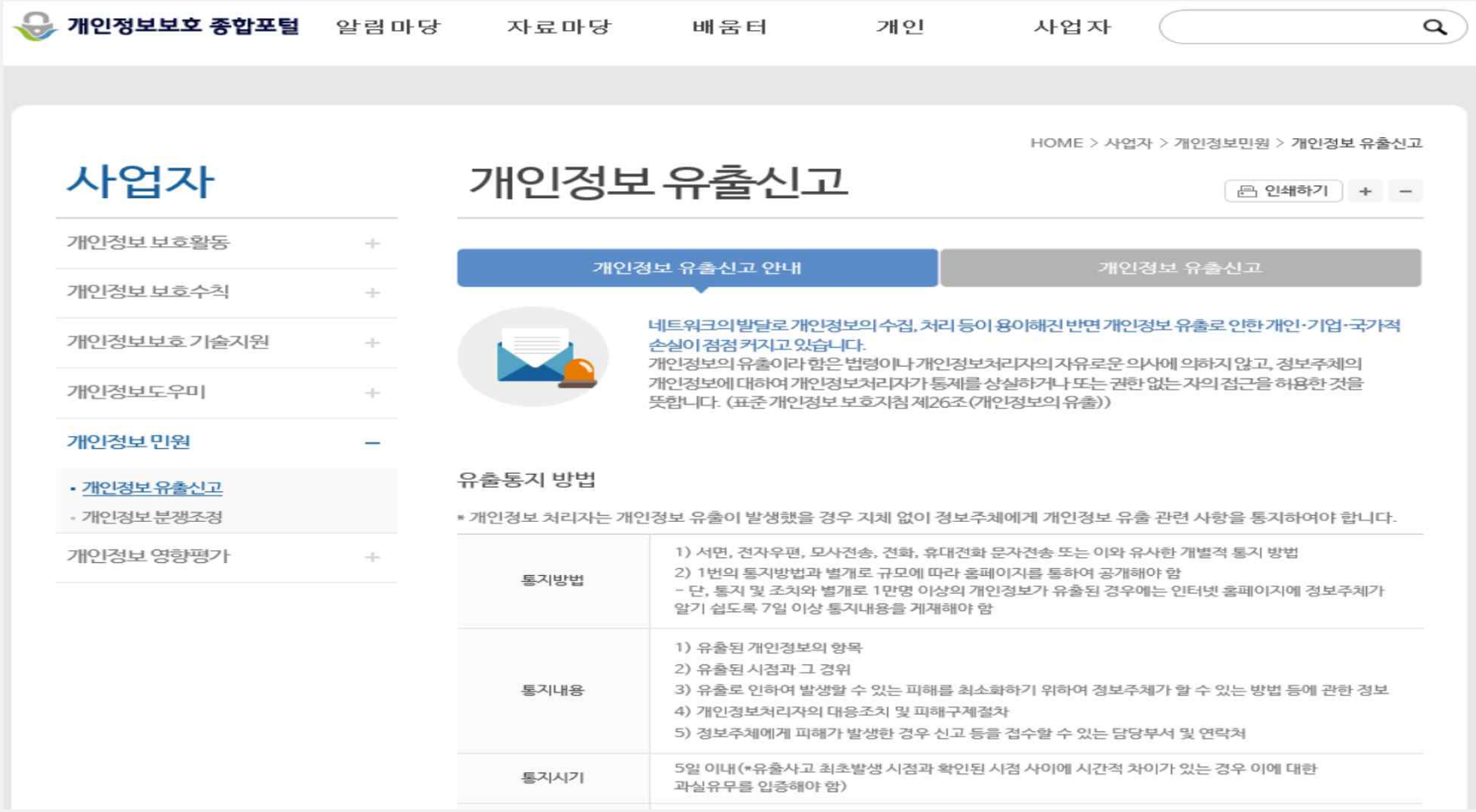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노출?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홈페이지 이용자)가 해킹 등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방치되어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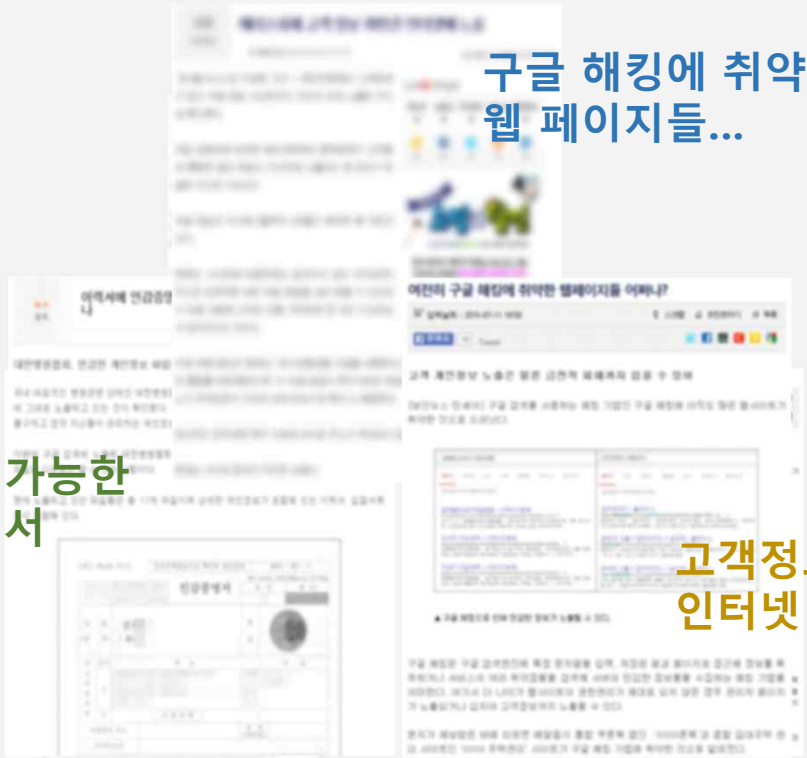

구글 해킹에 취약한
웹 페이지들...

구글에서 검색가능한
개인정보 이력서

고객정보가
인터넷 노출된 웹 사이트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이유?

02. 사례중심의 개인정보

노출사고 예방

1. 개인정보 최소 수집
2. 개인정보의 파기
3. 다시 한 번 문서/ 홈페이지 확인
4. 관리자 페이지는 반드시 보안 설정
5. 주기적 점검은 필수

FINISH

정보보호 관리체계

- 정보보호 관리체계 필요성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국가, 공공기관을 위한 ISMS-G 시스템이 필요하다!

03. 정보보호 관리체계

03.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Security is a process, not a product"
보안은 제품(기술)이 아니라, 프로세스이다

거버넌스(Governance)
강화 측면

- 거시적 관점에서 정보보호 전략 체계를 마련하고 적절한 기술과 인력을 유지
- 보안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적 인력과 프로세스를 운영
- 경영 효율화와 강화된 정보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

준거성(Compliance)
측면

- 개인정보 법규제의 강화에 맞춘 보안관리 노력 필요

보안관리증적(Evidence)
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법적 준거성 활동의 증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안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이 필수

03.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 ISMS-G

ISMS 인증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활동 등이 인증 심사 기준에 적합한 지를 인증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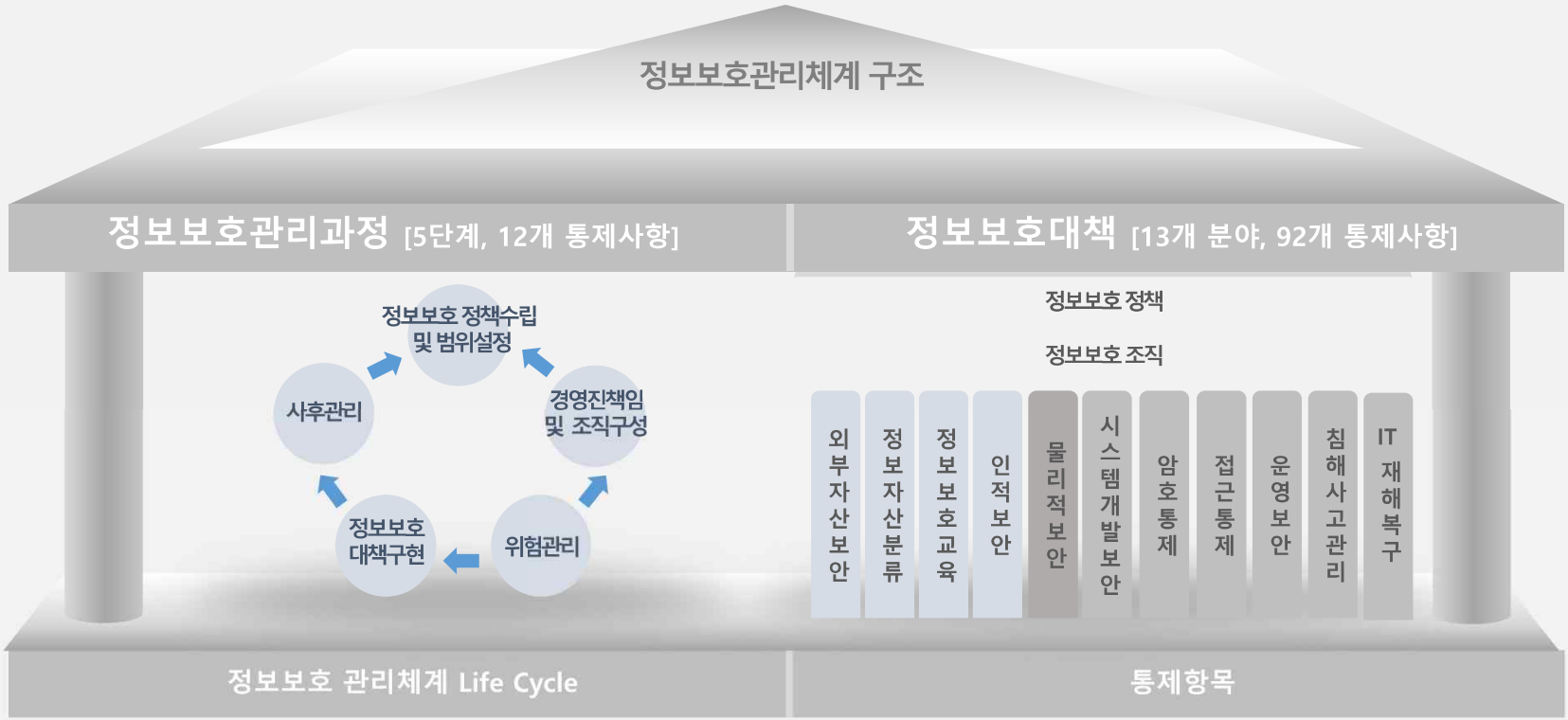

03. 정보보호 관리체계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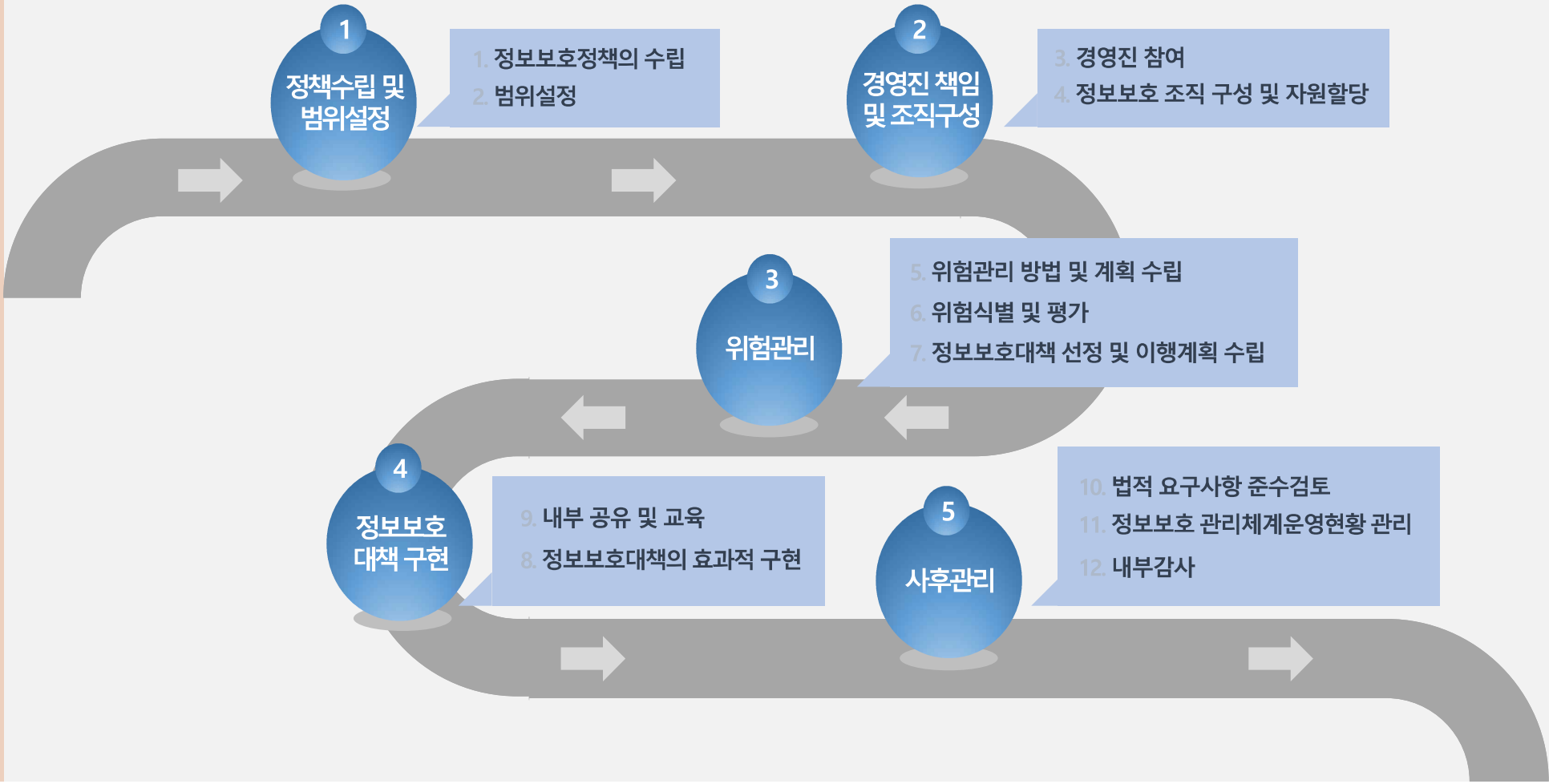

FINISH
OUR
PRESENTATION
THANK YOU

박나룡
isssi@isssi.org